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오케이파이낸셜대부

2. 조치일 : 2023. 10. 6.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3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부중개인 관리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9조에 의하면 대부금융회사는 대부중개인에 대한 대출모집계약의 체결·해지 절차,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모니터링 절차, 고객정보의 보호 대책 및 관련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2회 이상 대부중개업자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검사착수일(2022.5.30.) 현재 A대부중개 등 21개사와 대부중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①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② 고객정보 관리실태 등을 연간 1회 형식적으로 서면 점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대부중개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정기적(연간 2회 이상)으로 점검하여 불법·부당한 대출모집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중개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시기 바람

< 관련규정 >

1. 한국대부금융협회 규정 「대부중개업무 관리규정」 제9조

나. 개선사항

(1)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 미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등에 따라 대부 이용자 보호기준을 내규로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선임하고 있으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상근 임원(경영본부 이사)을 위촉(2016.7.25. 위촉 후 2회 연임)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영업실태와 관행에 대한 점검 및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 교육에 대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독립 전담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보호감시인 1인이 담당하고 있어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보호감시인의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대상·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식 문서로 기록·보관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정 조직을 마련하는 등 조직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람

(2)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업무 불철저

채무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체결된 대부계약의 상환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검사착수일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를 수기로 계산하고 있어 담당자별 계산방식 차이·수수료율 등 상환 조건에 대한 착오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 운용중인 대부전산시스템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자동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민원처리 업무 관리 미흡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30조에 의하면 채권추심회사 등은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민원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에 대한 조사·점검, 민원발생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 민원처리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검사착수일 현재 민원처리 업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민원관련 교육, 민원 점검 및 민원발생 행위자 제재가 미비하여 유사 민원사례가 반복되는 등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앞으로 민원처리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 방법, 민원 예방 교육시기·방법, 사후관리를 포함한 민원처리 업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민원처리 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람